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세부의제별 간담회 토의자료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금융서비스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국 시장현황

일시 : 2002. 5. 16(목) 16:00 ~ 20:00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아스토크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1. 개관
 2. 금융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의 주요 내용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 <별첨 I> GATS의 주요 내용 설명
- <별첨 II> DDA 서비스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과거 서비스는 비교역재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UR 협상에서야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발효된 바 있다.¹⁾ 상품교역을 규율하는 GATT가 출범한지 50여년에 달한 것에 비해 GATS는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 출범시 농업과 함께 서비스는 5년 이내에 협상을 재개하는 후속협상의제(built-in agenda)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2001년 3월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골격을 담은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2001년도에 각국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2002년 3월 종합적인 검토회의(review session)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에는 다른 분야의 협상개시 여부가 불투명하여 비교적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협상의 진행에 만족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1차로 양허요청안(request list)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양허안(offer list)을 2003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1차로 양허 요구사항과 수용사항을 주고받은 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도하개발아젠다 전체 협상시한인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서비스협상은 크게 모든 분야에 수평적으로 적용될 규범분야와 분야별 양허협상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범분야에서는 먼저 UR 당시 향후 협상에서 규범제정을 논의하기로 규정하였던 긴급세이프가드, 보

1) GATS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참조.

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한 규범제정 작업이 GATS 규범작업반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에는 2002년 3월까지 완결하기로 한 긴급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보조금과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규범분야로서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 GATS 제6조 4항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적 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제조치가 서비스교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규제작업반이 설치되어 주로 국내규제의 투명성과 필요성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MFN(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면제 및 항공부속서에 대한 검토와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MFN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GATS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MFN 의무에 대해 UR 당시 각국별로 면제조치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들 MFN 면제조치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현재 GATS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항공운송에 대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 분야의 발전상황을 검토하여 GATS 적용 확대여부를 고려하게 되어 있는 항공부속서 규정에 따라 각 세부업종별로 시장발전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자발적 자유화 문제는 WTO 출범 이후 양허표상 약속된 사항에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한 자유화 조치들에 대해 향후 협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양허협상은 각국이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표에 기재할 자유화 약속사항을 협상하는 것으로서 2001년 12월까지 그 기초작업으로서 23개국이 100여 개의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여 각각의 관심분야에서 향후 협상에서 중점을 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 내용을 보면 각국은 향후 서비스 협상에서 기존의 양허 내용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통신, 금융, 건설, 유통, 운송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서비스 및 시청각서비스 등 최근 실물경제에서의 발전상황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높아진 분야들의 다자간 자유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UR 당시보다 각국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점진적 자유화'라는 GATS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각국의 개발정도에 적합한 정도로만 개방을 약속하는 한편, 개도국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력이동(mode 4)²⁾ 및 관광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개도국에 불리한 장애요인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금융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의 주요 내용³⁾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2001년 12월까지 미국,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콜롬비아, 한국 등 모두 9개국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미국은 향후 온라인을 통한 बैं킹, 증권거래, 보험서비스, 금융정보서비스 등 국경간 공급 형태가 전체 금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본적으로 자유화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2) GATS는 서비스교역의 공급형태(mode)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 자연인의 이동 또는 인력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mode 4)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3) 이 부분은 2001년 12월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서비스협상 각국 제안서 분석 및 우리나라 관련 규제 분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 금융부속서의 정의 사용: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음.
- ▶ 상업적 주채의 형태에 대한 제한 철폐: 지사, 현지법인, 합작 등
- ▶ 국경간 형태의 서비스공급에 대한 제한 철폐
 - mode 2: 부속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양허
 - mode 1: 금융정보 및 자문서비스, 재보험 및 재재보험(retrocession), 해상·항공·운송보험, 보험중개(대리인, 중개인), 보험공급에 부수적인 서비스(자문, 보험계리, 위험평가, 청산 서비스 등)
- ▶ 서비스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 철폐: 수량쿼터, 배타적 공급자 지정, 경제적 수요심사 등
- ▶ mandatory cession 의무 철폐(특히 재보험의 경우)
- ▶ 자연인의 일시적 진입에 대한 적절한 양허
- ▶ 법규 및 관행의 적용상 내국 서비스공급자와의 차별 철폐
- ▶ 상업적 주채에 대한 기득권 보장(grandfathering)

미국은 또한 국내규제 관련 규범을 논의하는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작업에 보완적으로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원칙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사전 comment 및 응답
- ▶ 절차 및 소요시간 공표, 거부사유 제공
- ▶ 규제기구의 독립성
- ▶ 신보험상품의 사전 심사 생략 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나. EC

EC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속서상의 정의를 사용하고, “금융서비스 양허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s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이하 “양해”로 지칭함)에 의거하여 양허안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독점권, 정부조달의 MFN 및 NT, 운송보험·재보험·재재보험·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공급, 신금융상품 허용 등이다.

한편, mode 별로 구체적인 제안을 열거하였는데, mode 1과 mode 2에 관해서는 mode 1과 mode 2간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므로, 양허시 양자간의 일관성에 유의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양해”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 ▶ 운송보험·재보험·재재보험·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공급 허용
- ▶ 금융중개를 제외하고 금융정보, 금융자료처리, 기타 부수서비스의 이전 허용
- ▶ 직접보험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 허용

mode 3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 외국인소유지분 제한 철폐
- ▶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 철폐
- ▶ 기존투자 보호(safeguarded, grandfathered), 지리적 확장 또는 특정지역내 영업형태에 대한 제한 철폐
- ▶ 지불제도, 자금조달 및 리파이낸싱시설 등에 대한 접근상의 차별 철폐
- ▶ 자율규제기구·거래소·청산대리를 포함한 기구 및 협회에의 가입 등에 대한 차별 철폐

mode 4와 관련하여서는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국내규제의 투명성, 비례성, 필요성을 중시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MFN 면제조치를 철폐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 UR 당시와 같이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상하기를 제안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 ▶ 모든 분야와 mode에 대해 자유화 확대,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mode 1과 mode 2의 자유화 확대
- ▶ 금융부속서상의 정의 사용
- ▶ WPDR의 작업과는 별도로 투명성 규범 명확화
- ▶ 개도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phase-in)” 자유화를 허용함으로써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성 및 이해 인정

라. 호주

호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MFN 기초에서 NT 및 MA 상 자유화를 확대하고, 건전성규제가 투명하고 효과적이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 외국인소유지분 제한 완화
- ▶ 상업적 주재의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 완화
- ▶ 역외로부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급 능력 개선
- ▶ 금융상품의 수와 형태에 대한 융통성 제고
- ▶ 정부지도 대출 또는 운영상 통제 완화
- ▶ 인력의 이동과 고용에 대한 자유 제고
- ▶ 해외에서 획득한 자격의 인정

마. 스위스

스위스는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현행 분류를 검토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이 “양해”를 사용하기를 요망하였다. 특히, 전자금융을 포함한 신금융상품이 여러 분야로 분류될 수 있고, 최근의 보험과 은행업무간의 수렴현상에 따라 현행 분류상의 구분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양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법적 형태, 지분소유, 공급자의 수 등에 대한 제한 철폐
- ▶ mode 1과 mode2간의 조화 확대: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mode를 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요망
- ▶ 보험분야에서는 연금운용 및 자산운용 관련 새로운 상품의 출현 등과 같은 변화를 양허에 반영
- ▶ 생명보험, 보험중개(intermediation)서비스, 부수서비스, 중개(brokerage), 자산운용, 청산서비스, 정보의 공급과 이전 등에 대한 양허 확대

한편, 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금융감독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예외로 인정되는 건전성규제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를 요망하였다.

또한 e-커머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mode 1과 mode 2에 대한 양허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e-커머스의 성장이 금융서비스의 현행 양허에 미치는 영향과 mode 1 및 mode 2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를 요망하였다.

바. 일본

일본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은 각 기업의 자금조달 및 신용창출 방법을 다각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안정화를 통해 국별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들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제안서에서 제시하였다.

- ▶ MFN 면제조치
- ▶ 외국자본의 참여에 대한 제한
- ▶ 설립형태에 대한 제한
- ▶ 설립 수 및 지역에 대한 제한
- ▶ 경영진 및 고용자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외국인 고용자의 수에 대한 제한
- ▶ 강제적 해외 재보험 요건, 국영보험회사에 의한 독점
- ▶ 외국회사에 대한 차별적 조세 대우
- ▶ 특정 사업운영에 대한 제한
- ▶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 ▶ 지방정부간의 상이한 규제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양해”에 근거하여 양허를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서에서 밝히고 있다.

사.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모든 회원국이 금융서비스부속서와 “양해”에서 사용된 정의에 따라 양허를하기를 촉구하고, 특히 해운운송과 관련된 보험 분야에서 추가적 양허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금융서비스 분야 자유화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제도상의 개발정도를 감안하여야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따라서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기초한 시장접근 제한은 일부 회원국에게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해당국의 금융, 통화, 외환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의 범위가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향후 금융서비스 협상의 목적 중 하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MFN 면제조치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상호인정 협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GATS 제7조 4항이 이행되기를 제안하였다.

자. 한국

한국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왜곡하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의 점진적 제거에 목적을 두었다.

- ▶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지분소유 제한, 사업형태 제한, 국적요건 등
- ▶ 상호주의에 근거한 MFN 면제조치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이한 규제

단,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는 대규모 자본이동과 관련이 없고 다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예: 금융컨설팅서비스, 신용평가사업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전성 규제가 외국공급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도록 남용되지

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건전성 규제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제안서에서 적시하였다.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금융서비스는 미국, EC,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이들 선진국들은 특히 “양해”에 의거하여 양허안을 작성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mode 3상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술발전예 따라 향후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mode 1과 mode 2에서도 양허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mode 3에서는 대부분의 제안국들이 지분소유, 법적형태, 공급자의 수나 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mode 1의 경우는 특히 금융정보·자문, 재보험, MAT 보험, 보험중개·부수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양허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mode 1의 자유화가 대규모 자본이동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국한되기를 제안한 바 있다.

mode 2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고, 특히 운송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에서의 해외소비를 양허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WPDR과는 별도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국내규제 관련 원칙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도 건전성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개도국으로서 제안서를 제출한 콜롬비아는 각 회원국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mode 1과 mode 2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1> 금융서비스 분야 제안서 내용 비교

국명	제안 내용	기타 유의 사항
미국	mode3 제한 철폐, 전 분야 mode2 양허 금융정보·자문, 재보험, MAT 보험, 보험중개·부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mode1 양허	금융서비스분야의 독자적인 규제원칙 논의
EC	운송보험, 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 등의 mode1 양허 금융정보, 자료처리, 기타 부수서비스의 이전 허용 광범위한 분야에서 mode2 허용(직접보험제외) mode3상 지분·법적형태·지리적확장 등에 대한 제한 철폐	“양해”에 의거 양허안 작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MFN 면제조치 철폐
캐나다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별도로 양허협상 mode1 및 mode2의 자유화 확대	WPDR과 별도로 투명성 규범 명확화
호주	지분·법적형태 등에 대한 제한 완화 금융상품의 수·형태에 대한 융통성 제고 인력이동·고용에 대한 자유 제고 해외취득 자격 인정	-
스위스	mode3상 법적형태·지분·공급자 수 등에 대한 제한 철폐, mode1과 mode2의 결합 검토 생명보험, 보험중개·부수서비스, 자산운용·연금운용 정보의 공급·이전 등의 분야에서 양허 확대	“양해”에 의거 양허 예외로 인정되는 건전성규제 의 정의 명확화 e-커머스의 성장이 현행 양허와 mode1·mode2간 의 관계에 대한 영향검토
일본	지분·설립형태·수 및 지역 등에 대한 제한 완화 국적·거주요건 완화 해외재보험 요건, 국영보험회사에 의한 독점 완화 외국회사에 대한 차별적 조세대우 개선	“양해”에 근거하여 양허
노르웨이	해운 관련 보험 분야에서 추가적 양허	“양해”에 의거하여 양허
콜롬비아	mode 1과 mode 2의 자유화는 각국의 금융·통화· 외환정책 고려하여야 함. 상호주의에 기초한 MFN 면제조치 철폐	GATS제2조4항 상호인정 관 련 규정 이행
한국	mode 3상 지분소유 제한, 사업형태 제한, 국적요건 MFN 면제조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상이한 규제 등 의 장애요인 점진적 제거, mode 1의 자유화는 대규 모 자본이동과 관련 없는 분야에 국한	건전성규제의 투명성과 객관 성 높이는 방안 논의

<별첨 I> GATS의 주요 내용 설명

1. 용어의 정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 전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 지칭한다.
-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한다.
-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 지칭한다.
-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라 지칭한다.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MFN)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인과 내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네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3. GATS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표
- ▶ 최혜국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면제목록

이들 네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표와 최혜국대우의 일시적 면제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양허목록은 회원국들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앞으로 3년간 DDA 협상에서 기존의 양허사항을 추가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별첨 II> DDA 서비스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표 2>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변화를 기존의 CGE모형에 반영한 Michigan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를 사용하여 DDA (뉴라운드) 협상 결과 서비스교역장벽이 33% 감축될 것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⁴⁾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의 결과 후생이 52억 달러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약 0.9%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후생효과는 증가율 면에서는 일본이나 EU 및 EFTA 등과 비슷한 수준이나,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환경이 양호하지 못하여 FDI 유입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은 UR 당시와 2000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장벽 지수를 산출하여 DDA 서비스협상에서 각각의 시점에서 25%씩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CGE 모형을 사용하여 산업별 파급효과를 예측한 결과이다(김준동·장인수 2000, pp.80).⁵⁾ DDA 결과 서비스산업이 자유화될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나고, 개방정도가 클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서비스협상의 결과 서비스업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서비스업종 자체보다도 제조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에 중간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결과 투입재로서의 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제조업 부문의 생산, 고용,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4)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교역장벽으로서 Hoekman(2000)에서의 각국의 영업마진율을 사용하였다.

5) 이 분석에서는 서비스 개방의 효과를 가격하락에 따른 효과에 중점을 두어 추정하였고,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표 2> 주요국의 DDA 서비스협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국가명	수입 (십억달러)	수출 (십억달러)	교역조건 (%)	후 생		실질임금 (%)	자본이득율 (%)
				(%)	(십억달러)		
일본	14.3	16.7	-0.33	0.95	61.6	0.20	0.23
미국	33.3	35.5	-0.31	1.65	150.0	0.43	0.46
캐나다	5.8	6.6	-0.25	1.46	10.6	0.70	0.79
호주	1.2	0.8	0.53	0.65	2.8	0.50	0.40
EU 및 EFTA	30.8	25.6	0.50	0.94	103.4	0.20	0.21
홍콩	3.7	2.6	0.87	1.78	2.3	1.90	2.17
중국	3.8	4.5	-0.19	0.79	7.1	0.20	0.21
한국	3.7	3.5	0.08	0.91	5.2	0.61	0.61
싱가포르	0.8	0.6	0.11	2.62	1.9	3.46	2.50
대만	1.8	1.9	0.01	0.49	1.7	0.40	0.36
인도네시아	0.8	0.9	-0.13	0.79	2.0	0.20	0.17
말레이시아	0.8	0.9	-0.06	0.54	0.6	0.32	0.32
필리핀	1.3	1.3	-0.27	1.68	1.5	1.17	1.17
태국	2.2	2.4	-0.30	1.12	2.3	0.76	0.60
칠레	0.4	0.4	0.06	1.17	0.9	0.65	0.61
멕시코	2.4	2.7	-0.17	1.49	5.2	0.47	0.55

주: DDA 결과 서비스교역장벽이 33% 감축될 것을 가정한 것임.

자료: Brown et al.(2001), Table 5.

<표 3> DDA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개방의 산업별 파급효과

단위: %

산 업	UR 당시 기준 25% 개방			2000년 5월 자유화수준 대비 25% 추가 개방		
	고용	중간재	투자	고용	중간재	투자
1. 농축수산물·광업	1.66	0.26	1.13	3.43	0.54	2.39
2. 음식료품	0.78	0.42	-0.88	1.79	0.96	-1.59
3. 섬유, 의류	6.34	4.04	6.41	12.48	7.94	12.41
4. 목재, 종이, 인쇄	1.59	0.95	0.14	3.25	1.93	0.22
5. 석유, 석탄	4.82	1.12	4.16	10.50	2.43	9.23
6. 화학제품	1.81	0.76	0.42	3.70	1.56	0.81
7. 비금속, 금속	1.44	0.68	0.02	2.82	1.34	-0.27
8. 일반기계	2.37	1.46	1.19	4.67	2.89	2.16
9. 전기, 전자	1.57	0.59	0.07	3.41	1.27	0.35
10. 수송장비	2.01	1.30	0.72	4.22	2.73	1.59
11. 기타제조업	3.25	2.07	2.36	6.54	4.16	4.62
12. 전기, 가스, 수도	1.08	0.25	-0.53	2.87	0.66	-0.29
13. 건설	-0.23	-0.16	-2.18	-0.59	-0.40	-4.65
14. 도소매	1.98	0.78	0.74	3.97	1.56	1.37
15. 음식점, 숙박	-8.61	-5.12	-13.24	-5.82	-3.46	-11.56
16. 운수, 보관	1.30	0.78	-0.28	4.83	2.91	2.22
17. 통신, 방송	0.25	0.11	-1.59	0.45	0.19	-3.39
18. 금융, 보험	0.53	0.38	-1.16	0.77	0.55	-2.85
19. 부동산, 사업서비스	-0.91	-0.30	-3.07	-3.95	-1.29	-9.06
20. 교육, 보건	-0.39	-0.35	0.00	0.19	0.17	0.00
21. 문화오락	-0.00	-0.00	-1.88	0.23	0.13	-3.57
22. 기타 서비스	-0.07	-0.07	0.00	0.72	0.69	0.00

자료: 김준동·강인수(2000)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준동 외. 2000.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정책연구 00-05.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강인수. 2000.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00-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헌

- Brown, Drusilla. A., Alan V. Deardorff and Robert M. Stern. 2001. "CGE Modelling and Analysis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Negotiating Options." RSIE Discussion Paper No. 468,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Hoekman, Bernard. "The Next Round of Services Negotiations: Identifying Priorities and Option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82:31-47.
- Kim, June-Dong. 199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Working Paper 99-09.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

양두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1. 서론
2. WTO 금융서비스 협상의 원칙과 한계
3. 주요국 GATS 양허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WTO의 전신인 GATT 체제하에서 논의되었던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은 UR 협상의 결과로 금융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한 일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GATS 체제의 출발과 함께 본격적인 다자간 협상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다자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시장접근에 대한 안전성과 예측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내외 차별을 없애야 하고, 자본 및 경상 거래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교역재적 성격을 띄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자간 자유화 조치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와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대외적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금융서비스 주체의 국내 설립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내재적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금융서비스 협상은 대외적 자유화를 위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2(해외소비)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고, 대내적 자유화를 위한 Mode 3(상업적 주재)와 Mode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자유화 조치는 최초로 다자간 투자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자본 이동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자본거래 자유화를 다자간 차원에서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협력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자간 금융서비스 협상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및 자유화 정도가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 많은 장애 요인을 안고 진행되어 왔다. GATS의 기본틀 속에서 진행된 금융서비스 협상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각국의 양허 정도가 미약했고, 다양한 예외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회원국 전체에 의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개도국의 시장 개방 약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도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차등 적용할 것을 천명하면서 많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후 EU와 일본이 주도한 잠정합의안(Interim Agreement)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이 이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의 총인구에서 금융서비스 분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8-3.8%에서 1995년 3.2-4.7%로 상승하였다.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2.2-4.3%에서 1995년 2.5-6.6%로 증가하였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경간 교역도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수출이 1985년 30억 달러에서 1996년 103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입도 1985년 25억 달러에서 1996년 7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경간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국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100대 은행에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은행이 속하게 되었고, 개도국이나 체제 전환국의 은행들도 OECD 국가에 상당수 진출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 बैं킹 및 증권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적 전송에 의한 금융 자문과 정보제공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mode 1 형태의 교역이 보다 증가할 것이지만, 보안이나 다른 규제 등으로 인해 아직은(특히 개도국에서) mode 3이 주된 공급형태로 남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각 국의 WTO 금융서비스 양허안을 중심으로 양허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과 국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 국의 양허안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2. WTO 금융서비스 협상의 원칙과 한계

GATS 체제의 가장 큰 특성은 각 국의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투명성과 최혜국 대우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자유화의 원칙은 다양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제한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은 자동적인 구속 요건이 아니라 협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차별적 조치를 요인하고 있다. 더욱이 GATT 체제의 가장 중요한 최혜국 대우 원칙도 보류사항(reservations)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경제 협력, 국제수지 문제 등 다양한 차별성을 용인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건전성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한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가. 시장 접근

GATS의 금융서비스는 크게 보험서비스와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로 나누어져 있다. 즉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재재보험, 보험중개서비스, 부수 서비스(자문, 사정, 위험평가, 청산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리스, 지불·송금, 보증, 머니마켓·외환·파생상품·증권, 증권발행, 통화중개(money broking), 자산운용, 청산, 금융정보서비스, 자문·기타 부수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의 분류에 따른 GATS의 시장접근은 조건부 또는 제한적인 자유화를 용인하고 있다. 즉, 각 부분에 대한 4 개의 모드(mode)에 대한 조건부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외국소유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새로운 은행설립에 대한 경제수요 조사 등이 허용된다. 이러한 각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은 양허안에 열

거됨으로써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결국 포지티브 열거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서비스 자유화에 관련해서 새로운 분야나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항을 열거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즉 새로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차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금융 상품에 대한 제한 조치가 언제라고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제한조치를 협상을 통해 다자간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약속에 대한 양해각서 (Understanding)”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자유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 보험관련 서비스(해상운송, 상업항공, 재해보험 등)에 대해서 국경간 거래 자유화를 의무화하고 있고, 은행 및 증권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 국경 내에서 회원국의 거주자가 모든 은행 및 증권서비스에 대한 해외소비(mode 2)를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금융서비스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설립과 확장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GATS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서비스의 공급에 한정되어 있다. 즉 금융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서비스가 공급되고 공급자 주체에 대해서만 금융서비스 협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한 국가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GATS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비거주자의 본국에서 해외 예금을 허용하는가 하는 것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 국가에서 거주자의 해외 예금에 대한 자유화를 인정하였다고 해도 대상 국가인 B 국가가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금서비스의 실질적인 국경간 거래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예외 조항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예외 조항의 선정은 다양한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특성상 정부규제나 간섭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 규제의 주요 형태는 거시정책정책, 건전성 규제, 건전성 이외에 공공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교역장벽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상의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인정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제한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제한은 국제수지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주재 및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한편, 경상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는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에 비해 덜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둘째는 건전성 기준에 의거한 시장 제한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정보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GATS에서 인정되고 있는 건전성 예외 조항은 협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측면에서 악용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즉, 외국기관의 국내 사업 허가 또는 차별적인 적정 자본 비율 선정 등 차별적인 조치들이 건전성 규제 조항으로 인정되어 자본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민 대우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건전성 규정에 의한 제한 조치가 검증 절차를 걸쳐 시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건전성 제한 조치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투명하고 명확한 방식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건전성 기준에 의한 제한 조치는 WTO 분쟁기구에 제소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부속서에는 건전성 기준에 의한 양허 기준

의 회피 행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와 건전성 제한 조치의 구별을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수지 및 건전성 기준에 의해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차별 조치가 허용된다. 시장접근에 대한 교역장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특정 법적설립형태 및 합작에 대한 제한, 지분참여 제한, 인가 수에 대한 제한(수량쿼타, ENT, 신규인가 중지 또는 동결, 지점 또는 ATM의 운영 수에 대한 제한 등이 대표적인 시장 접근 제한 조치들이다. 내국민대우에 관한 교역장벽으로는 외국은행에 대한 특별한 승인요건,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 및 거주요건, 조세 및 보조금(특혜대출 등이 있다.

3. 주요국 GATS 양허현황

가. 선진국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Understanding에 의거해 다자간 체제 하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방화된 조치가 확립되었다. 선진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반영하면, 이러한 개방화 조치는 세계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방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가 높다. 그러나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보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외적 개방조치가 이미 이루어져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 국경간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자유화 조치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상거래 지급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고 일부 국가(그리스 노르웨이 등)는 자본거래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와 리트첸슈타인만이 선진국 중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 조건없

이 자유화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조건부 자유화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은 은행 및 증권 서비스에 대한 해외소비(mode 2) 자유화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자유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국경간 공급 즉,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 상품의 거래는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 정책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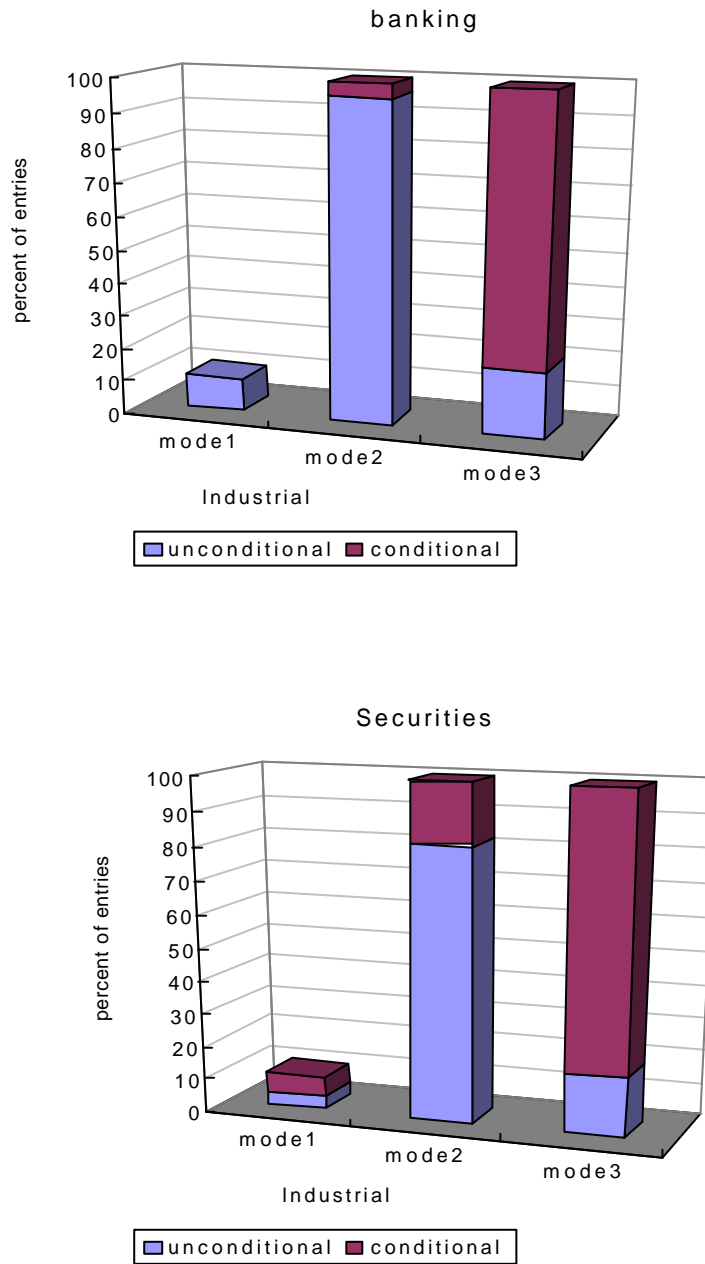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양허하였으나, 오직 20% 정도만이 조건 없이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에 있어서는 이사진에 대한 국적 제한 및 거주자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전 업종을 양허하였으나, 주법에 따라 지점·자회사·대표사무소의 초기진입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즉 신용조합과 저축은행은 지점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금지하는 등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이사의 50%와 설립자에 대해 국적요건이 부과되고, 주별로 설립자본금이나 사무소의 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의 경우는 과세나 영업허가 수수료면에서 외국공급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

EC의 경우 일부국가가 운송관련 보험의 mode 1, 2를 개방하지 않고, 국적요건, ENT, 설립형태 제한, 지분상한 등을 두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의 경우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선진국에서 GATS 체제하의 양허 수준이 다른 선진국간의 다자간 협상 또는 경제협력체(EU, OECD, NAFTA)에 비해 낮은 이유는 건전성 및 감독 체제가 현저히 다른 국가들과의 금융 기관의 접근이 자칫 국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선진국 은행 및 증권서비스 양허 정도



나. 신흥시장국⁶⁾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국경간 거래에 대한 양허

6) 신흥시장국은 잠정협약(Interim Agreement)에 참가하였고, Understanding 작성에도 일부 참가한 주요 신흥시장국을 포함한다.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국경간 공급(mode 1)에 대해서는 은행 및 증권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20%만이 양허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이중 50% 이상이 조건부 양허 이행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본수지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신흥시장국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수지 거래 제한은 해외 소비(mode 2)에 대한이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상업적 주재에 있어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고 있는데, 홍콩과 헝가리의 경우에만 제한 없는 외국 은행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한 조치는 법적 형태 및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들이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동구권개도국은 헝가리와 체코가 'Understanding'에 의거하여 양허하는 등 비교적 개방수준이 양호하나, 중남미 개도국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신규진출 및 영업확대를 금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제한이 심한 편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동결시키고, 재보험을 양허하지 않았으며, 외국은행에 대해 국내은행에 비해 2배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조치를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 상한을 40%로 설정하고 있음.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에도 특히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지분상한을 두거나, 지점수를 제한하는 등 양허수준이 저조한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 생명보험을 전혀 양허하지 않았고, 손해보험도 화물보험의 mode1만 양허하였고, 은행부문에서도 지점의 인가수를 제한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 합계가 은행시스템 총자산의 15% 초과시 신규 외국은행 인가를 불허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재보험 mode 1,2에 대해 총재보험 규모의 10%를 국내회사에 양도해야 하는 제한을 하고 있고, 보험, 투자은행, 증권 등의 분야에서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개별법에 따른 지분제한 외에 은행의 경우 지점이나

부지점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라부안 지역외에서는 신규인가를 개방하지 않은 분야가 많고, 신규지분참여에도 상한을 두고 있다. 태국도 보험 및 은행의 경우 지분상한을 25%로 설정하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 대해 국적요건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최근 가입한 중국 및 대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에 대해 49%의 지분상한과 최대주주 금지 제한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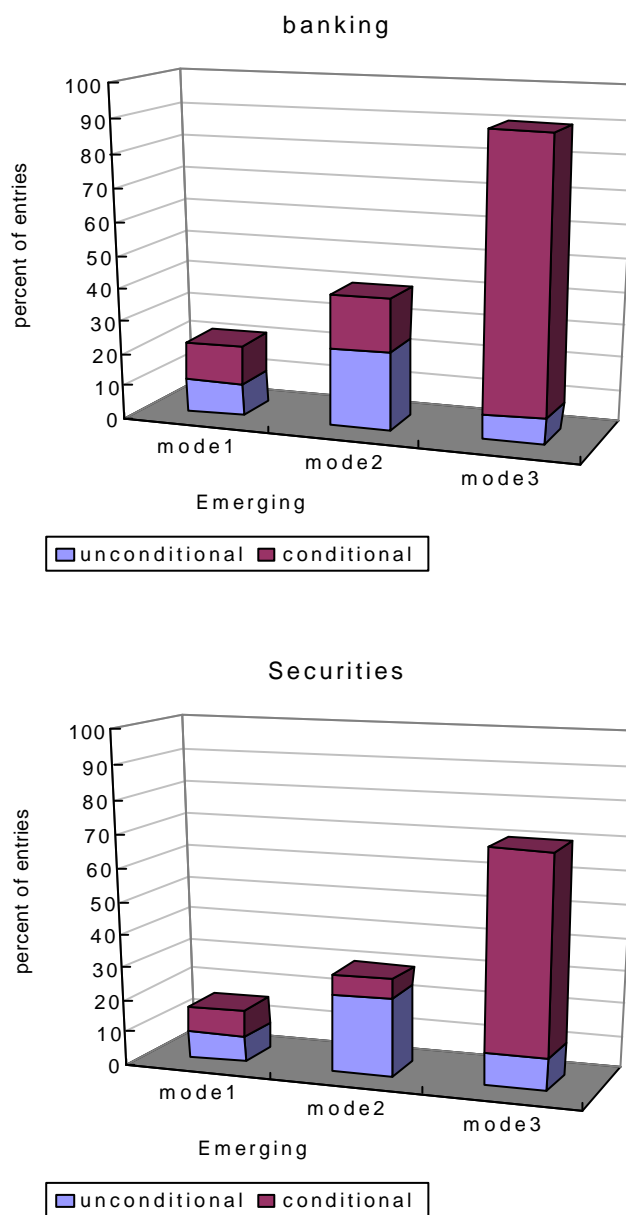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는 보험업의 지분상한 및 지역제한과 은행의 인민폐 영업에 대한 지역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양허하였다. 단, 총자산 등의 영업인가요건이 과도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측면이 있다. 대만의 경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등의 분야에서 법적 형태를 제한하고, 투자신탁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외환거래 중개와 자산운용업의 지분 제한을 두었다. 한편, 상당수 개도국들이 기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보호하는 'grand-fathering'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브라질,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되어서 선진국과 차별되는 부문은 이들 국가들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사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상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는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남아 있는데, 이익금의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거래는 물론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들에게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의 상업적 주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자유화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높은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신흥시장국들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금융

시장의 하부구조의 선진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 자유화는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금융시장 개혁 및 금융 시장 건전성 규제 등이 보다 선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신흥시장국의 은행 및 증권 서비스 양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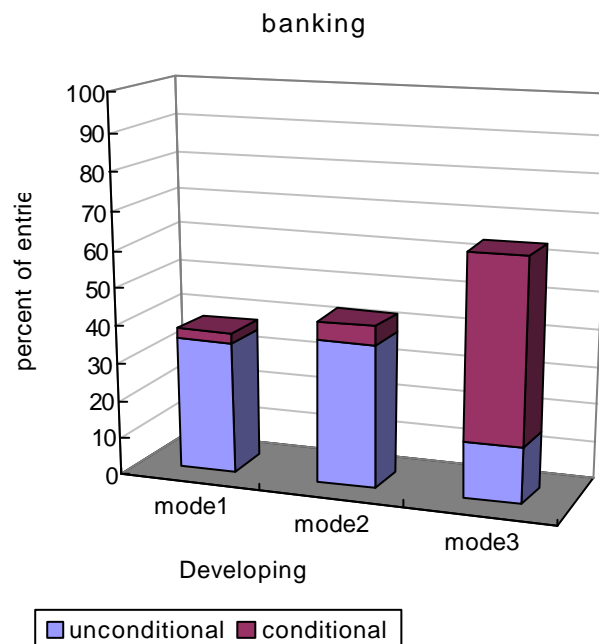


다. 기타 개도국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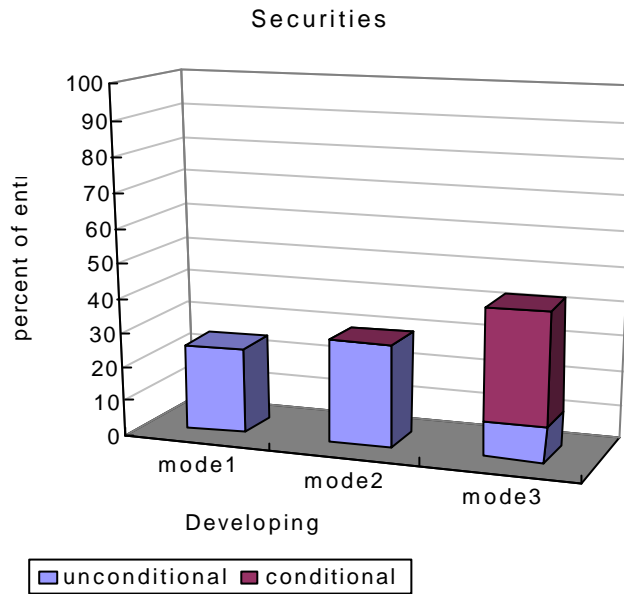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규모가 적고, 양허 수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는 상대적으로 신흥시장국에 비해 매우 개방적인 양허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도 있다.

은행 및 증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40%의 양허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건 없는 국경간 공급(mode 1)과 해외 소비(mode 2)를 양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적 주재의 양허와 관련해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은행의 자유화 정도는 높은 편이다.

<그림 3> 기타 개도국의 은행 및 증권 서비스 양허 현황



⁷⁾ 기타 개도국은 잠정 협의안(Interim Agreement)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 개도국으로 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개도국들을 포함하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GATS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선진국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앞에서 나타나듯이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한 개방 압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mode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끌어 냈다. 특히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신흥시장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해 상업적 주재에 대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양허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 수입국인 신흥시장국의 입장에서 다른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서 금융 부문의 개방 또는 자유화에 대한 동기 부여가 높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지나친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서비스 협상이 다른 서비스 협상과 달리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의 금융서비스 협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협상으로 인해 다자간 금융 자유화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서비스 협상에 있어 다양한 예외 조항을 인정함으로써 차별적인 제한 조치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등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향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표 1> 금융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UR 양허 현황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미국	생명·손해보험	1,2,3: △	자회사 또는 지사 초기설립금지(미네소타 등 20개주)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루이지애나 등 20개주)
	재보험, 재재보험	1,2,3: △	자회사 또는 지사 초기설립금지(생명·손해보험과 동일) 정부소유·통제 보험회사 영업불가
	보험부수서비스	1,2,3: △	중개인과 대리인에 대해 거주요건 주별로 일부 업종에 대해 초기진입제한 주별로 일부 업종에 대해 국적요건(앨라바마 등 7개주)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	1,2,3: △	신용조합·저축은행은 지점을 통한 서비스공급 불가 이사의 50%와 설립자 국적요건 주별로 금융기관 초기진입제한(캘리포니아 등 34개주) 주법에 따라 여러 제한조건 부과(1개 은행당 1개 사무소 조건 등)
EC	보험	1,2,3: △	일부국가 운송관련 보험 mode1,2 미개방(DK: 의무항공운송보험·손해보험, F: 육상운송보험 등) E,P: 지점·대표사무소 설립전 자국내 5년 이상 운영경력요건 GR: 이사진 50% 이상 국적요건 FIN: 이사진 50% 이상 역내 거주요건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	1,2,3: △	I: 자산운용 등 mode1,2 미개방 전회원국: 단위신탁·투자회사업무 위해 특수경영회사 설립 필요 B,DK,E,GR,I: 증권거래 위해 자회사 설립 필요 P: 역외국 은행설립에 ENT 적용 GR: 은행지분 상한 40% IRL: 은행 대표사무소 설립 금지
일본	보험	1,2,3: △	일본으로 운송된 상품관련 보험의 mode1,2 미개방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60%는 정부에 의해 의무 커버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1,2,3: △	임의투자자문업 mode1 미개방 투자신탁운용업은 법인만 가능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호주	보험	1,2,3: △	생명보험은 자회사만 가능 일부 주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및 근로자소득보상보험 등의 분야 제한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1,2,3: △	지사는 소매예금수신업 불가 증권중개기관의 이사진 50% 거주 요건
폴란드	보험(부수서비스외 전업종)	1,2,3: △	재보험·재재보험·수출입상품 보험외의 mode1,2 미개방 보험중개업외에는 joint stock company만 설립가능 자산의 5% 이하만 해외투자 허용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리스·통화중개·청산 등 제외 전업종)	1,2: × 3: △	간부직중 1인에 대해 국적요건 증권업무는 joint stock company나 branch로만 설립가능
체코	보험(전업종)	1,2,3: △	'양해' 적용 재보험은 상업적주제 요건 joint stock company나 branch로만 설립가능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통화중개 제외 전업종)	1,2,3: △	joint stock company나 branch로만 설립가능 증권업무 인가규정의 투명성 결여
헝가리	보험	1,2: △ 3: ○	'양해'에 의거 mode1,2 부분개방외 제한없음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	1,2: △ 3: ○	'양해'에 의거 mode1,2 부분개방외 제한없음
아르헨티나	보험(중개,보험부수서비스외 전업종)	1,2: × 3: △	신규설립승인 중지
	금융자문·정보외 전업종	1: ×, 2,3: ○	-
	금융자문·정보	1,2,3: ○	-
	신금융서비스	1,2,3: ×	mode4의 수평적 조치외 미개방
브라질	생명·손해보험	1,2: × 3: △	지분상한 50%, 의결권 1/3 특정 법적설립주제 요구(S.A.) 재보험·재재보험 미개방
	보험중개·대리	1,2: ×, 3: △	자연인만 가능
	보험자문·사정	1,2,3: ○	-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청산·금융정보제공 제외 전업종)	1,2: ×, 3: △	신규진출 및 영업확대 금지 ATM 독립적 설치사용 제한 최저자본금요건 차별(국내은행의 2배 부과)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칠레	생명·손해보험 보험중개	1,2: × 3: △	생명·손해보험은 법인설립해야 함
	재보험·재재보험	1,3: △, 2: ×	법인설립해야 함
	은행(예금, 대출, 리스, 자문·기타 부수서비스)	1,2: × 3: △	10% 이상 지분획득·양도에 대한 승인 요건 리스, 자문·기타부수서비스는 자회 사만 허용(리스는 영업제한 가능)
	증권(중개, 위험평 가, 청산, 금융자 문, 자산운용, warrants)	1,2: × 3: △	법인설립해야 함 위험평가업의 경우 주파트너가 60% 이상 지분소유해야 함 warrants업은 겸업 불가
멕시코	생명·손해보험 보험중개	1,2: × 3: △	지분상한 40%, 개인한도 10%(인가 시 20%)
	재보험, 재재보험	1,3: △ 2: ×	재보험의 model 영업등록 거부가능 지분상한 생명·손해보험과 동일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지분송금· 청산·금융정보업 등 제외 전업종)	1,2: × 3: △	지분상한(은행·증권: 40%, 기타: 49%) 개인지분상한(은행: 5%, 증권·기 타: 10%, 신용정보: 30%)
카타르	보험	1,2: ○, 3: △	외국보험공급자의 수 5개로 동결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1,2: ○ 3: △	외국은행 지점수 8개로 동결
UAE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청산 제외)	1,2: ○ 3: △	신규지점 및 영업확대 미개방 대표사무소 설립은 전면 개방
인도	손해보험	1: △, 2,3: ×	화물보험의 model만 개방
	재보험·재재보험	1,2: △, 3: ×	인도 국내회사가 커버하고 남은 잔 여부분에 대해서만 model,2 허용
	재보험 중개	1,2,3: △	재보험의 model,2 관련 제한 적용 대표사무소 설립 허용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	1,2: ×, 3: △	은행은 지점만 가능(인가수 제한) 은행시스템 총자산의 15% 초과시 신규인가 불허 지분상한(증권, 금융자문, 리스, 팩 토링, 벤처캐피탈 등)
파키스탄	생명보험	1,2: ×, 3: △	지분상한(기존: 25%, 신규: 51%)
	손해보험	1,2: ×, 3: △	기존회사 영업범위, 지분구조 양허
	재보험, 재재보험	1: ○, 2,3: ×	-
	은행(예금, 대출, 리스, 자산운용 등)	1,2: × 3: △	지분상한(은행: 49%, 리스, 자산운용: 51%)
	증권	1,2: ×, 3: △	은행이 자본의 30% 이내에서 underwriting 가능
	금융자문	1,2: ×, 3: △	은행의 자회사(100% 지분가능)를 통한 영업허용
	금융정보	1: △, 2,3: ×	상업적주재를 통한 model만 개방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홍콩	생명·손해보험	1: ×, 2,3: △	자동차책임보험의 mode2 미개방 대표사무소는 보험업 불가
	재보험·재계보험	1,3: △, 2: ○	홍콩내 대리인 없는 경우에만 mode1 개방 대표사무소는 보험업 불가
	보험부수서비스	1: △, 2,3: ○	청산서비스의 mode1 제한
	은행예금, 대출	1: ×, 2: ○, 3: △	1개 빌딩으로 제한, full license에 인가경력 기간 제한 대표사무소는 예금수탁 불가
	외환, 증권거래 등	1: ×, 2: ○, 3: △	법인이나 5년이상 거주자만 증권거 래소 가입 가능
	리스,보증,금융정보	1,2,3: ○	-
	지분·송금, 증권 발행, 자산운용	1: ×, 2,3: ○	-
	금융자문	1: △, 2,3: ○	상품거래 및 투자자문서비스의 mode1 제한
인도네시아	생명·손해보험	1,2: ×, 3: △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
	재보험	1,2,3: △	S&P BBB이상에만 mode1,2 개방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
	보험·재보험 중개	1: ×, 2: ○, 3: △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
	은행	1,2: ○, 3: △	지점: 1 부지점, 1 부수사무소 합작: 1 지점, 1 부지점
	카드, 소비자신용	1,2: ○, 3: △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
	팩토링	1: △, 2: ○, 3: △	국제팩토링거래만 mode1 개방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
	증권, 자산운용, 금융자문 등	1: ×, 2: ○, 3: △	해당업무 영위 회사설립 통해 mode3 허용
말레이시아	생명·손해보험	1,2,3: △	라부안이외지역 신규인가 미개방 신규지분참여상한 30% 생명보험 mode1,2 미개방
	재보험, 보험중개 보험부수서비스	1,2,3: △	재보험의 mode1,2는 국내이용불가 시만 허용 재보험 2005년까지 신규인가 제한 재보험 합작지분상한 49% 역내보험중개는 미개방
	은행	1,2,3: △	라부안이외지역 신규인가 미개방 신규지분참여상한 30%(개인 20%) 5% 이상 지분취득시 불투명한 요 건 부과
	기타 금융서비스	1,2,3: △	지분상한(동화중개, 증권, 자산운용, 상품선물중개, 자문 등: 30%, 리스, 증권중개: 49%)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필리핀	보험	1,2,3: △	필리핀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mode1,2 제한 재보험 mode1,2의 경우 총보험규모의 10%를 국내회사에 양도 지분상한 40% 국적요건(이사진의 2/3 이상)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	1,2,3: △	외은지점 영업허가 제한 지분상한(은행: 49%, 금융자문, 팩토링, 리스, 증권거래: 40%) 국적요건(투자은행, 증권)
싱가포르	생명·손해보험	1,2,3: △	생보 mode1,2 미개방 손보 mode1 미개방 지분상한 49%, 최대주주 금지
	재보험, 보험중개 보험부수서비스	1,2,3: △	재보험은 지사나 자회사만 가능 보험중개 mode1 미개방, mode3 자회사로서 재보험중개의 미개방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	1,3: △, 2: ○	예금, 대출 mode1 미개방 신규외국은행은 역외은행지점과 대표사무소만 설립가능 일반인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조사, 상담의 mode1에 대해 상업적 주재 요건 부과
태국	보험(재보험 제외)	1,2,3: △	국제운송관련의 손보 mode1미개방 보험중개 mode1,2 미개방 지분상한 25%(손보, 생보, 보험중개)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	1,2,3: △	금융자문, 데이터처리 mode1,2개방 은행지점확대 2개로 제한 지분상한(은행, 자산운용: 25%, 증권, 리스, 팩토링, 카드: 49%) 국적요건(은행, 증권, 자산운용)
중국	보험	1,2,3: △	국제운송관련보험의 mode1 미개방 보험중개 mode2 미개방 지분상한 및 지역제한 단계적완화 영업인가요건(총자산, 영업경력)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	1,3: △, 2: ○	금융정보·자문의 mode1 미개방 인민폐영업 지역제한 단계적완화 영업인가요건(총자산, 2년 연속흑자)
	증권	1,3: △, 2: ○	B주식의 mode1 미개방 지분상한·영업범위제한 단계적완화

국 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대만	생명·손해보험 보험중개	1,2,3: △	생보, 중개 mode1,2 미개방 손보 mode1 미개방 생보, 손보 법적형태 제한
	재보험, 보험중개 보험부수서비스	1,2,3: ○	-
	은행 및 기타 금융	1: ×, 2:○, 3:△	법적형태 제한, 지분 15% 이상 취 득시 허가요건, 투자신탁 신규진입 금지, 외환거래 중개회사 지분제한 대출한도
	증권	1: ×, 2:○, 3:△	자산운용회사 지분제한
	금융정보	1,2,3: ○	-
	금융자문	1: ×, 2:○, 3:△	-

주: ○ 전면개방, △ 부분개방, × 미개방
mode4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미개방